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본문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주민세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시세이므로 교육재정 부담확대재원 보전이 가능하나 도의 경우 시·군세이므로 교육재정 지원주체와 주민세수입이 증가하는 시·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나, 1996년도의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인상할 때에 이미 세율인상에 따른 도와 시·군간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진 바 있고, 이번 세율조정은 부칙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던 세율을 본칙에 반영한 것이며, 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배분시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개정개요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부칙에서 10%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본칙에 반영하여 7.5%에서 10%로 인상조정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 법제176조

주민세소득할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를 개정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조정되었다.

<표 4>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개정전		개정후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9.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

1) 배 경